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문·검사·조사·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2024. 5. 20. 시행, 법률 제19885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20211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방법·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요양기관의 확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안 제

26조제3항제1호 본문)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 재산 기준을 세대 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100만
원 미만에서 세대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강화함.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및 조정 절차 마련(안 제41조 및 제41조
의2)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소득 산정·조정
등에 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
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의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조정하도록 함.

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정비(현행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
지 삭제, 안 제42조의7제4항)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구성, 위원
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는 그 결과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구체화(안 제69조
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질문·검사·조사·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마. 요양기관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7 제2호나목 신설)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7. ~ 4.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00만원 미만이고”를 “336만원 미만이고”로, “100만원 미만일”을 “450만원 미만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부분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을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

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직장가입자”를 각각 “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회”를 “12회”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를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7제4항 중 “제도개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 제목“(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료율은”을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46조제1호가목 중 “제42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질문·검사·조사·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검사·조사·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4의 제목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 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별표 7 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법 제119조 제4항제3호	30	60	1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급여의 제한) ①·② (생략)</p> <p>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u>제42조제3항제1호</u>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p> <p>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u>100만원 미만</u>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u>100만원 미만</u>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p>	<p>제26조(급여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u>제42조제1항제1호</u> ----- -----.</p> <p>1. ----- ----- ----- <u>336만원 미만</u> ----- <u>이고</u>----- ----- ----- ----- <u>450만원 미만</u> ----- -----.</p>

만일 것

2. (생략)

④ (생략)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략)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생략)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③ (생략)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2. (현행과 같음)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

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하 “연말정산”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5회로 분할하여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연말정산을 제외한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1회에 전액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

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10회 이내의 범위에
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생략)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
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
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
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
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
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
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
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
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
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
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 소득월액보험
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
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
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
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

도 자료로 한다.

2. (생략)

④ (생략)

⑤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직장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 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한다. 이하 같다)-----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⑤ ----- 제4항-----

-----.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

-----.

② (생략)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직장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생략)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가입자

④ (현행과 같음)

⑤ -----

----- 가입자 -----

⑥ ----- 12회 -----

⑦ (생략)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 재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범위·산정방법·반영시기 및 소득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월액”은 “보험료부과점수”로, “소득월액보험료”는 “월별 보험료액”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 ③
(생략)

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정보를 말한다.

- 1. 2. (생략)
-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정보

⑤ (생략)

제42조의3(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2. (현행과 같음)
- 3.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2조의2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 보험료 부과체계, 조세, 주택, 금융 또는 연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명 이내

3.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4(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2조의5(제도개선위원회의 회

<삭 제>

의) ①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제도개선위원회
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42조의6(간사) ① 제도개선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
한 적정성 평가) ①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
우 그 결과를 제도개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
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은 1만분의 709로 한다.

<삭 제>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
한 적정성 평가)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심의위원회 -----
-----.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
과점수당 금액) ① -----
-----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생략)

② -----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

1. -----

가. 제41조제1항-----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3(질문·검사·조사·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검사·조사·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2